

2022년 공개SW 기업성장 지원사업 안내서

2022. 3.

목 차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2
2. 추진방향	2
3. 추진체계	3
4. 관련규정	3

II. 사업내용

1. 지원개요	5
2. 선정방법	7
3. 사업관리	9
4. 추진일정	11

III. 신청 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13
2. 신청방법	14
3. 작성요령	15
4. 유의사항	16
5. 문의처	19

I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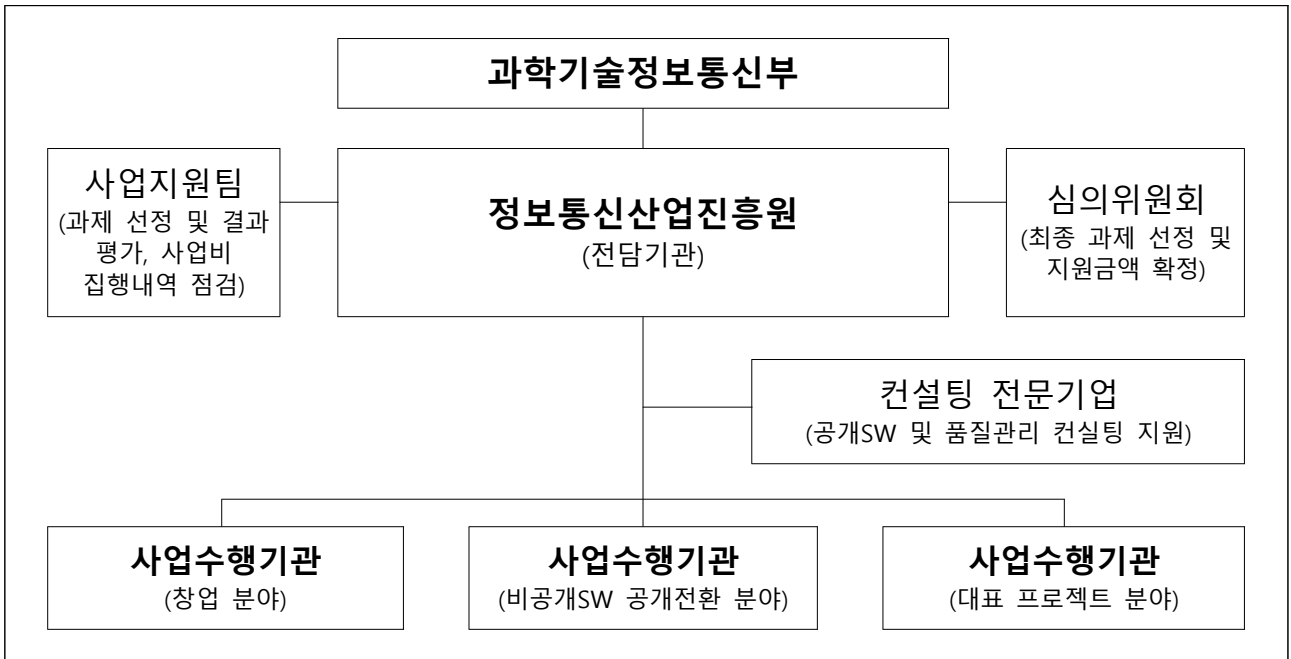
1 추진배경

- 최근 탄소중립, 분산화, 디지털화 등의 메가트렌드로 인해 공개SW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과 융합되어 시장 지속 성장
-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공개SW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내기업 주도의 공개SW 개발 및 기여는 미흡*
 - * '21년 국내 공개SW 전문기업은 126개로서('20년 110개), 프로젝트(솔루션) 기반의 기업은 17개이며(전년 동일), 대부분은 기술지원 기업임
- 또한, 소스코드 공개 및 공개SW 개발방식* 적용 등 전략적 활용에 미온적이며, 전통적인 SW 개발방식(폐쇄형) 및 유통구조를 고수
 - * 공개SW의 활용을 단순 비용절감 요소가 아닌 개방형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여 및 기여 중심의 공개SW 활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급변하는 기술·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의 공개SW 개발 및 전략적 활용을 통한 체질 개선 필요

2 추진방향

- 공개SW 기반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조기 정착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성장 단계별 공개SW 전문기업 육성
-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산업 디지털화,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등 유망 분야의 민간 주도 선제적 기술 개발 지원
- 非공개SW 기업이 보유한 既 개발된 상용SW의 소스코드 공개전환 분야 지원을 통해 국내 SW기업의 개방형 혁신 유도
- 지원대상 SW기업의 성장 단계별 공개SW 개발방식, 전략 컨설팅, 품질 관리 및 검증, 홍보 등의 맞춤형 지원 추진
- 개발된 공개SW 프로젝트를 일괄 검색할 수 있는 채널(공개SW포털, www.oss.kr)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및 사용자 확보 지원

3 추진체계



- * '전담기관' 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함
- * '사업수행기관' 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주관/참여)
- * '창업' 및 '비공개SW 공개 전환' 분야는 **공동수급 불가**, '대표 프로젝트' 분야는 **가능**

4 관련규정

본 사업 적용 규정 및 지침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부속 지침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II

사업내용

1

지원개요

지원방법	○ 자유공모 방식 총 10개 과제 내외 선정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분야 : 인공지능(AI), 블록체인, VR/AR,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新산업 분야 기술 개발 창업기업(창업 후 3년 내 기업 대상) ○ 非공개SW 공개전환 분야 : 프로그램 등록이 완료된 상용SW 보유 기업이 해당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 대표 프로젝트 분야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회보장·복지 증진 SW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촉진 IoT 서비스 등 기술 개발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기업 등 법인 * 지원기업 적격성 판단을 위해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2항 적용 		
지원기간	○ 협약일 (5월 1일 예정) 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약 7개월)		
지원규모	창업	비공개SW 공개 전환	대표 프로젝트
	5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0.8억원	3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1.5억원	2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3억원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지원금액 15억원 한도 분야별 차등 지원, 10개 과제 내외 선정 *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신청금액 조정 및 차등 지원 가능 * 본 사업은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가 면제됨 * 정부출연금은 사업비 입금 사정에 따라 분할 지급 예정 ○ 사업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 정산 실시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적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장비구입 및 시제품 제작 등 SW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적용 * 창업 분야 선정기업 대상 오픈업(선릉역 부근) 내 별도 사무공간(2인석) 지원(필요시) ○ 과제 수행 시 기업 성장 단계별 컨설팅 지원 * 별도 관련 전문가에 의한 공개SW 개발 및 품질관리 컨설팅(비즈니스 모델 개선, 오픈소스 개발방식, SW 품질관리 및 검증 등) 지원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과제별 산출물은 공개SW 라이선스를 가져야 하며, 개발 초기부터 github 등 공개 저장소에 공개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상 운영 ○ 공개SW 개발방식 이행을 위해 외부 기여자 최소 1인 참여 유도 ○ 공개SW 라이선스 검증(1회 이상) ○ SBOM(SW Bills of Materials) 시범 적용(라이선스 검증 결과 활용) ○ 사업기간 내 과제별 중간점검(진도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이행 ○ 사업기간 이후 5년간 성과(경제적 성과, 일자리 창출 등) 조사 이행 ○ 그 외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 		

□ 세부 지원분야

- **창업 분야** : 공개SW 기반 유망 스타트업 조기 발굴 및 초기 정착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 * 인공지능(AI), 블록체인, VR/AR,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新산업 분야 기술 개발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 **非공개SW 공개전환 분야** : 프로그램 등록이 완료된 상용SW* 등 보유 기업이 해당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 * 기존 非공개SW의 프로그램 등록부, 조달등록증, 개발용역 및 R&D 사업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당 SW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유 必)
- **대표 프로젝트 분야** : 탄소중립,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 서비스 등 유망 분야 민간 주도의 선제적 기술 개발 지원

세부 분야	대표(플래그십) 프로젝트 분야 개발 서비스(예시)
그린테크	탄소중립,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SW 기반 친환경 엔지니어링 서비스 * Green Coding 표준 개발, SW산업 탄소저감 모니터링, 폐배터리 재이용 서비스, 생활폐기물 모니터링 등
공공 서비스	복지국가 실현 및 사회보장·복지 증진을 위한 SW 중심 공공 서비스 * 드론 무인 항공 기술, 국가재난(팬데믹 등) 관리 SW, 취약계층을 위한 UI/UX 표준 개발, 외국인 민원관리 서비스, 중소기업 비대면 업무환경 SW 등
IoT 서비스	AI, Big Data 등 신기술의 확장성을 고려한 IoT 서비스 개발 * 디지털 프로토타입 서비스, Reusable IoT 센서용 SW, 디지털 휴먼 증강 서비스, 스마트 드라이빙 서포터, 수질관리 모니터링 서비스 등



2

선정방법



-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적정 여부, 지원과제 중복 여부, 의무사항 이행 여부, 관련 규정 평가배제 대상 여부 등 검토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통한 검토
- * 부적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제외 및 평가 배제, 평가반영 등 조치 실시
- * 사전검토 대상은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 모두 해당

< 사전검토 주요내용 >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사업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 여부 * 창업 분야 :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별첨 등 신청서류 제출 및 적정 여부
중복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 중복 여부(NTIS 조회 등) * 단, 既 개발 과제의 사업화 성격으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경우 예외
의무사항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관련규정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제2항 평가배제 대상 적용 * 기업의 부도 *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및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창업 분야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서면 및 발표 평가) 평가기준 기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평가기준 >

구분	주요내용		배점
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과제의 기술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의 기술적 우수성, 중요성, 파급효과 등 - 공개SW 개발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여부 - 개발의 목표(지표 등)의 적절성, 본 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 공개SW 프로젝트 개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SW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 등의 활동 및 참여 경력, 기여도 등 		25
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SW 기술로서의 창의적 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분야) 개발 기술의 新성장 산업으로서의 적용 가능성 - (공개전환 분야) 非공개SW 공개 시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 - (대표 프로젝트 분야) 개발 기술의 해당 분야 활용 가능성 ○ 개발(전환)과제의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및 공개SW 개발의 장점 		20
실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SW 라이선스 선정 및 비즈니스 전략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라이선스 및 사유의 적정성 - 공개SW 기반 비즈니스 전략 및 모델의 적정성 - 소스코드 공개 범위의 적정성 ○ 개발(전환) 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규모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 세부 추진단계별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등 		20
발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화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대표 프로젝트 분야 공통) 사업 종료 후 사업화 성공 가능성 - (공개전환 분야) 非공개SW 공개 전환 후 성공(매출 확대 등) 가능성 ○ 공개SW 프로젝트로의 성장 및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개발자 참여 유도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발전 계획의 적정성 - 해당 SW의 지속적인 개선 및 고도화 계획의 적정성 		30
일자리 부분	○ 고용현황	○ 직전년도 3년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 유형(정규직 비율, 청년 일자리 등) 변화, 4대보험 가입률 등	2
	○ 일자리 확대·개선 실적	○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등 실적	1
	○ 계획 여부	○ 본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 및 계획 마련	2
합계			100

* 서면평가는 접수과제 수에 따라 생략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및 개별 통보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표평가는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

- *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포함 참여인력 한정 최대 4인 참석 가능
 - * 발표평가 참석 시 참여인력 증명이 가능한 4대보험 등 서류(택1) 제출 필요
 - * 발표평가 시 **반드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를 하여야 함
 - * 발표평가는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으로 총 40분 동안 진행 예정
 - * 사전 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불참 시 기 제출된 자료로 서면평가 진행
 -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탈락, 60점 이상 과제 중 상위 순위부터 선정
- **(종합심사)** 발표평가 결과 기반 지원금 총액 및 과제별 신청 예산 등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후 결과 통보
 -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과제 및 금액 최종 확정
 - * 평가의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및 사업내용 수정·보완 후 협약체결(협약 체결 포기 과제 발생 시 차순위 과제 지원)

3 사업관리

□ 사업관리 방안

- **(진도점검)** 개발현황, 외부개발 참여실적 등에 대한 진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비한 과제에 대한 문제 조기파악 및 조치
-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지원과제별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 (정기점검) 현장점검 계획에 의한 중간점검
 - * 점검시점 : 과제별 50% 이상 수행되면서 종료 2개월 이전 실시
 - (수시점검) 문제과제 발생 시 해당과제 현장점검
 - * 과제중단, 규정위반, 불성실실패 등 발생 시
 - (일상점검) 사업관리시스템(SMART) 상에서 수행과제 사업비 집행 내역 수시 확인
- **(관련교육)** 문제과제 발생 예방을 위해 협약 후 관련 규정, 사업 관리시스템(SMART) 활용법 등 교육 실시
- **(최종평가)** 협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도서식에 따른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한 결과평가 실시

- **(성과관리)** 당해년도 및 최근 5년간 지원사업 수행 과제별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지속적인 성과관리 수행
 - * 공개SW 개발 성과 : 과학적(논문, 포상 등), 기술적(특허, 제품 등), 경제적(매출, 투자유치 등), 사회적(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등), 인프라(장비 획득 등)
 - * 공개SW 활성화 성과 : 프로젝트 협업(Issue, Commit, Pull Request, Contribute 등), 프로젝트 활성화(Github 기준 Fork, Watch, Star, 릴리스/배포 등)
- 당해년도 수행과제별 예상성과 도출, 관리 및 공개SW 활용·확산 수준 측정·관리
- 최근 5년간('17 ~ '21년) 수행된 지원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중·장기적 성과관리 추진

□ 컨설팅 지원 방안

- **(개요)** 지원사업 수행기업 대상 공개SW 및 품질관리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한 과제 산출물 품질제고 및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수행기업의 성장 단계별 공개SW 개발방식, 비즈니스 모델 개선, 홍보 방식 등 컨설팅
 - 대상 과제의 목표, 사업화, 수행역량, 글로벌 진출 등을 고려한 사전 수준 진단 및 인터뷰 기반 중점 컨설팅 영역 도출
 - 사전 수준 진단 및 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컨설팅 범위, 방식, 수준, 일정 등을 해당 과제에 최적화한 맞춤형 지원 수행
- **(품질관리 컨설팅)** 개발 산출물(소스코드, 제품 등) 품질(성능, 기능 등) 제고 및 수행기업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 과제별 수행기업 품질관리 관련 사전 수준진단, 과제분석,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개발초기에서 종료시점까지 해당 과제의 품질관리 수행 및 결과물에 대한 검증(테스트) 실시(관련 도구 활용)
 -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컨설팅 지원, 이행여부 등 지속 관리

4

추진일정(안)

추진절차	주요 내용 및 일정	비고
사업공고	○ 사업공고 : 2022. 03. 04.(금)	NIPA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2022. 04. 04.(월) 까지 ○ 접수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전산접수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 사전검토 : 2022년 4월 1주차 ○ 서면평가 : 2022년 4월 2주차 - 신청과제 수가 지원과제 수 대비 2배수 이하 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 기 제출된 신청서 기반 서류평가 진행 및 발표 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 2022년 4월 3주차 - 평가대상 기관에게 별도 통보(일정 등) 예정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	○ 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4월 3주차 - 최종 지원 과제 및 금액 확정	심의위원회
선정발표	○ 발표일자 : 2022년 4월 4주차	개별 통보
협약체결	○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 2022년 4월 말 ○ 협약체결 : 2022년 05월 1일 예정	전자협약
중간점검	○ 중간점검 : 2022년 8월 중 - 과제별 사업추진 현황 및 진도 점검 - 과제별 사업비 집행 내역 및 현황 점검	현장방문 (필요 시 온라인)
최종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2022년 12월 초 ○ 각 과제별 최종 결과평가 : 2022년 12월 중	발표평가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회계법인 위탁정산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I

신청 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신청서) 및 별첨 각 1부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작성양식	비고
1	사업계획서(신청서)	별첨 양식
2	평가항목 참조표	제출서류 서식 1
3	과제 신청 자격요건 등 사전 자기점검표	제출서류 서식 2
4	신청기관 참여의사확인서	제출서류 서식 3
5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서류 서식 4
6	사업자등록증	고유양식에 따름
7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고유양식에 따름
8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년, '20년 ~ '21년)	고유양식에 따름
9	非공개SW 증명서류 (비공개SW 공개전환 분야 해당)	고유양식에 따름
10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붙임 2-3] 양식

- * 상기 제출서류는 모두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전산접수 함
- * 상기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예정임
-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리원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 * 상기 제출서류 중 일부 누락 시 사전지원제외 조치 가능

2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 기한

- 2022. 04. 04.(월) 15:00 까지

- ▶ 접수 기간 및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한을 준수
- ▶ 신청마감 당일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청 마감 1일 전까지 과제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접수 완료 권장

□ 신청 방법

- 신청 전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양식, 작성내용 등 사전에 작성 요령 등을 확인 후 최종 제출 요망
-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SMART시스템(<https://smart.nipa.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총괄책임자) → “접수” → “과제접수” → “접수중인사업(해당사업)” → “과제신청” 클릭
 - * 세부내용은 별첨 “[붙임 4] 전산접수 매뉴얼” 참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 접수
 - * “과제접수” 내 “과제정보”, “목적 및 내용”, “기관정보” 등 탭별 해당내용 입력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 * “과제접수” 내 “첨부자료” 탭에서 신청서류 업로드
<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별첨 파일은 압축파일 형태로 묶어서 업로드** >
 - * “과제접수”내 “최종확인” 탭에서 “접수완료” 클릭 및 상태값(“접수완료”) 확인 (상태값이 “접수중”인 경우 접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님)

3

작성요령

□ 필수 제출 자료 관련

- (사업신청서) 해당 양식을 숙지하고, 요구사항에 맞게 핵심내용 중심으로 누락 없이 작성하며, 가능한 그림, 표, 통계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

-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 입력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 주석처리(약어는 풀네임도 함께 표기)
- ◇ 별첨을 제외한 본문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 양식, 제목, 순서 등 수정 불가(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해당없음' 명기)
- ◇ 작성양식 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표시문구(파란색)는 제출 전 모두 삭제
- ◇ 해당 양식의 기본 폰트 및 사이즈로 작성하며, 페이지 번호 기재
- ◇ 제출일자는 사업관리시스템(SMART)에 신청일자로 기재
- ◇ 기관장 날인은 법인인감, 총괄책임자 날인은 서명 가능
- ◇ 본문 작성 시 공개SW 개발방식 관련하여, '**공개SW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 (https://www.oss.kr/oss_guide/show/27a0dab5-bb73-4e88-b797-b1e0f2b8017c?page=9)'을 반드시 참조
- ◇ **공개SW 라이선스** 관련 내용은 '**OSS 포털**(https://www.oss.kr/oss_license)' 참조
- ◇ 공개SW 관련 필수 강의 및 콘텐츠는 '**오픈업 채널**(https://www.youtube.com/c/OpenUP_OSS/videos)' 참조

- (사업비) 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충족하도록 재원을 책정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비목 편성

- ◇ 사업비 산정 및 편성 시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확인
- ◇ 위탁정산수수료 필수 편성(신청서 양식 내 수수료 요율표 참조)
- ◇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비 산정불가
- ◇ 사후 환급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산정
- ◇ 모든 사업비는 수행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함

4

유의사항

□ 지원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분야, 지원대상, 신청기관 자격 등 요건 미충족할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 대상 기술 분야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旣 지원, 旣 개발 되었거나, 민간에 의한 旣 개발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제외 함
 - * 단, 旣 개발 과제의 후속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제 성격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는 예외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기한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서류제출 및 기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등
 - * 우리원이 확인을 위하여 추가 제출요청 한 서류 중 지정 기한 내에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비 편성 및 관리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시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별도)은 지급된 사업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관리
- 사업수행 시 사업관리시스템(KCA PMS)을 이용하여 사업비의 집행, 사용 내역 등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직접고용 및 신규채용 규모 등 일자리 창출효과 선정평가 반영
- 수행과제의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 종료 후 성과조사 수행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 내 위탁기관의 업무 투입을 위한 신규 참여인력 채용계획 및 관련 분야의 고용 창출 기대효과를 제시해야 함(신청서 양식 참조)
- 제안 서비스가 클라우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 과제선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제출된 서류 및 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됨

□ 개인정보보호 관련(해당 기업)

-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제출양식)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선정기업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 * 교육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하여 수강 가능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5**문의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사업내용 관련	공개SW팀 김도형 수석	043-931-5373 dhkim@nipa.kr
전산접수 관련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070-5151-8239 smart@nipa.kr